

해양수산과학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업 무 내 용	우대요건
기간제 근로자	1명	2022. 8. 22. ~ 2022. 12. 31 ※ 사업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	- 관람객 매표 및 안내 - 전시관 운영 보조 등	- 유사경력 또는 과학해설사 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나. 급여수준 : 일급 87,200원 (※ 2022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적용)

-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및 본인 부담금 별도 공제

다. 근무장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76, 해양수산과학관

라. 근무시간 : 수요일~일요일 (09:00~18:00), 주5일(※ 휴게시간 : 12:00 ~ 13:00)

- 해양수산과학관 근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 근무 가능(근무 요일 변경 등)

마.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바.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응 시 자 격

- 가.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나.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만 18세 이상인 자)
- 라. 업무 특성상 신체 건강한 자

4. 원 서 접 수

- 가. 접수기간 : 2022. 8. 5.(금) ~ 2022. 8. 12.(금)
-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76, (☎ 061-644-4136)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전자메일(ghdtjr91@korea.kr)
(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에 한함)

라.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2)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최종합격자만 제출)

5. 채 용 방 법

-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 '22. 08. 16.(화)
- 나. 면접시험 : '22. 08. 18.(목)
- 다.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 '22. 08. 19.(금)

※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사 항

- 가. 응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라. 합격자의 신분상 결격사유가 있을시 채용은 다음 순위로 정한다.
- 마.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 061-644-4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접수번호

모집분야

업무보조

사진부착
(3×4cm)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현주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시군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증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우 대 사 항	우 대 사 항	발급일자	발급기관	우 대 사 항	발급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 성 요 령 >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붙임으로 작성 가능
- ④ 자 격 증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자격증 사본 제출
※ 전공, 사무관리·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등
- ⑤ 우대사항 : 현장유경험자,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⑥ 접수번호 :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자격증, 우대사항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탁연구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 및 신원조회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일 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양수산과학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년 8월 22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해양수산과학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해양수산과학관 팩스(061-644-4137) 또는 우편 중 구직자가 선택하여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해양수산과학관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7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